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6. 15 선고 2020가단747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대학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경

변 론 종 결 2021. 5. 4.

판 결 선 고 2021.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관하여 2019. 11. 22.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함)을 6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2. B이 C은행(합병 전 D은행, 이하 C은행이라고 함)으로부터 대출받을 10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약정(보증금액 90,000,000원)을 하고, 기보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B은 2019. 12. 10. 이자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C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여 원고는 2020. 4. 9. 위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합계 91,639,17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채권보전비용 255,609원, 미수보증료 440,130원도 B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라. B은 2019.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1991. 8. 20. B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협의이혼을 하고, 2020. 1. 8. 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B의 부정행위로 이혼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목적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

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2)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갑 제8, 9호증, 을 제1, 2, 13,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F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B이 위자료 지급을 포함한 재산분할을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및 증명은 전혀 없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이 사건 증여계약 일자(2019. 11. 22.)가 이혼신고 일자(2020. 1. 8.)보다 앞서지만 약 50일 정도에 불과하다. 통상의 이혼숙려기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또는 그 즈음에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와 B의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와 B의 혼인기간이 약 28년에 이르고, 자녀 2명이 있으며, B이 2016.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여 피고와 B이 이혼하게 되었으므로 B은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혼인기간 중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시가는 약 55,200,000원(이 법원이 실시한 감정결과는 2020. 11. 12. 기준 시가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갑 제9호증 기재 가격의 평균 가액으로 산정함)이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전 설정된 F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6,000,000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가치는 약 39,200,000원에 불과했다.

6) 피고가 B과 이혼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 이외에 다른 재산을

이전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구례군 아파트 동

[도로명 주소] 전라남도 구례군

시원트 벅홀츠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708.84㎡

2층 708.84㎡

3층 708.84㎡

4층 708.84㎡

5층 708.84㎡

지하실 창고 700.2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호

시원트 벅홀츠

73.9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전라남도 구례군

대 2500㎡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500분의 55.98

- 이 상 -

